

# 2022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개 요

- ◆ 일시·장소 : 2022. 6. 17.(금) 10:00~12:4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 참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6) : 이승한, 최승철, 김수정, 이임혜경, 손영주, 김원규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2) : 김형욱, 노승현
  - 소관부서(2)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8건

-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 의결사항 : 6건(권고 1건, 기각 2건, 이유없음(기각) 3건)

### 심의결과

총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8건	6건 (각하 2, 기각 1, 이유없음(기각) 3)	0건	2건

###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22-53	22신청-14	사업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각하(원안가결)
22-54	22의뢰-4	자치구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각하(원안가결)
의결사항 : 6건(권고 1건, 기각 2건, 이유없음(기각) 3건)			
22-55	22신청-1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재상정
22-56	22신청-13	직장 내 괴롭힘	기각(원안가결)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22-57	22의뢰-2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재상정
22-58	22이의-11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결정 이의(원사건 22신청-8)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59	22이의-12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기각 결정 이의 (원사건 22신청-10)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60	22이의-13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인격권침해 권고 결정 이의(원사건 22신청-12)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보고사항

### ○ [의안 제22-53호] 사업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22신청-14 (각하) 원안가결
- 신청인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요금감면 대상자라는 신상정보를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없이 집주인에게 알려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신청하였으나 현재 동일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7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함.

### ○ [의안 제22-54호] 자치구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2의뢰-4 (각하) 원안가결
- 자치구에서 위탁 중인 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동일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7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함.

## 의결사항

### ○ [의안 제22-55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2신청-16 (권고) 재상정
- 장애인 차별로 접근하지 않으면 미시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고 그러면 상당 부분 피신청인의 책임으로만 결론이 나게 되는데 장애

인을 의무 고용해놓고 제대로 관리와 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기관의 책임은 빠지게 됨. 따라서 이 사건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므로 장애인 차별의 관점에서 재상정 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의안 제22-56호] 직장 내 괴롭힘

- 22신청-13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까지 인정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피신청인의 초과근무 실적을 확인해 보라는 발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발언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의안 제22-57호]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 22의뢰-2 (기각) 재상정
- 피신청인의 폭력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나, 이 폭력 행사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함.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정당 방위적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거나,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취약함.
-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를 관리하지 못하면 기강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폭력 행위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 피신청인이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때리려면 때리라는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신청인의 목살을 잡고, 이후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등 피신청인과 피해자 간 쌍방 폭행이나 쌍방 분쟁의 성격이 있음.
-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업무 때문에 발생했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피신청인은 피해자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징

계 절차 같은 공적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의할 사안인지 의문이 들고 우위의 조건에 있어 거절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았을 때 신청인은 모든 결저항할 수 있고 거절의 가능성도 있어 우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의하는 것은 무리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재상정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의안 제22-58호]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결정 이의

- 22이의-11(원사건 22신청-8)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의신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59호]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기각 결정 이의

- 22이의-12(원사건 22신청-10)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은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 없이 원결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60호]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2이의-13(원사건 22신청-12)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중징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구제위원회는 원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의신청인이 새롭게 주장하는 인권침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